자율 균형 미래
발행처:경기진학정보센터
집필진:꿈진집필위원단

꿈진

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



경기도교육청
제2022-31호
(10월 13일 발행)
꿈을 만들어가는
진로진학교실

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안내

1.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

□ 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교협)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안을 마련하고, 대학·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,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검토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·의결을 거쳐 『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』을 2022년 8월 25일(목) 확정·발표하였다.

□ 대학입학전형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대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, **전년도 대학입학전형 수립 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**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위원회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기회균형 특별전형 운영안내를 위해 특별전형의 분류표 및 운영기준을 보완하였고, **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'만학도 특별전형' 자격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**하여 대학 간 상이했던 **연령기준을 통일**하였다.

□ 또한, 「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*」에 따라 학생선수의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**'체육특기자 특별전형'**에서 교과 성적과 출석뿐만 아니라 **'학교폭력 조치사항'을 필수적으로 반영**하도록 하였고,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[*문화체육관광부, 교육부('21.2.)-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]

2. 전형일정 <대학수학능력시험: 2024년 11월 14일(목)>

수시모집	내 용
원서접수기간	2024. 09. 09.(월) ~ 13.(금) 중 3일 이상 ※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: 2024. 07. 08.(월) ~ 12.(금)
전형기간	2024. 09. 14.(토) ~ 12. 12.(목) (90일)
합격자 발표	2024. 12. 13.(금)까지
합격자 등록	2024. 12. 16.(월) ~ 18.(수) (3일)
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	2024. 12. 26.(목) (합격자 발표 18시까지) ※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, 14 ~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***수시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: 2024. 12. 27.(금) 22시까지**

정시모집		내 용
원서접수기간		2024. 12. 31.(화) ~ 2025. 01. 03.(금) 중 3일 이상
전형기간	가군	2025. 01. 07.(화) ~ 14.(화) (8일)
	나군	2025. 01. 15.(수) ~ 22.(수) (8일)
	다군	2025. 01. 23.(목) ~ 02. 04.(화) (13일)
합격자 발표		2025. 02. 07.(금)까지
합격자 등록		2025. 02. 10.(월) ~ 12.(수) (3일)
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		2025. 02. 19.(수) (합격자 발표 18시까지) ※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, 14 ~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***정시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: 2025. 02. 20.(목) 22시까지**





꿈진
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

3.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

○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

○ 수시는 학생부위주, 논술위주, 실기/실적위주로, 정시는 수능위주, 실기/실적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

<표준 대입전형 체계>

전형유형	주요 전형요소	수시모집	정시모집
학생부위주*	• (학생부교과) 교과 중심	○	
	• (학생부종합) 교과, 비교과	○	
논술	• 논술 등	○	
실기/실적위주**	• 실기 등	○	○
수능위주	• 수능 등		○

*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
  • 학생부교과전형: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
  • 학생부종합전형: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
** 실기/실적위주 전형유형에는 '특기자 전형'이 포함되나,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하며,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

○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,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함
  •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
  •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

○ 전형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
  • 전형방법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의미함
    -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, 하나의 '전형방법'으로 산정함
    -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평가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
  •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(정원 내 전형 기준)
    - 수시 4개,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
    -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(6개) 산정에서 제외
    - 만학도 전형*', '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', '협약된 군사학과'의 경우,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(6개) 산정에서 제외 [*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에 한함]
    -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의 인·적성 평가,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
  • 동일 전형방법 내에서 우선 선발 방식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

○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, 위주 구분을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함
  ※ 예: 학생부종합(○○인재전형), 실기/실적(△△전형) 등



꿈진

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



4. 일반전형의 기본사항

가. 전형원칙(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4조 제1항)

○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

○ 적법성·타당성·신뢰성·공정성·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, 지원자격, 전형기준,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여야 함

○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(종교, 성별, 재산, 장애, 연령, 졸업연도 등)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

나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)

○ 모집단위의 설정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
-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학칙의 모집단위를 동일하게 설정함

○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함

○ 본교와 분교,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

다. 사정모형

○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

○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등을 포함하여 모집요강 공표 시 안내하여야 함(단,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예외)

5. 특별전형의 기본사항

가. 전형원칙(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4조 제2항)

○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, 사회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

○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, 적법성·타당성·신뢰성· 공정성·공공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형대상, 지원자격, 전형기준,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여야 함

나. 특별전형의 구분 및 운영

○ 정원 내 특별전형
-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함
-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

○ 정원 외 특별전형
-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·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
- 정원 외 특별전형은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요소 또는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,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함



○ 특별전형의 분류

장애인 등 대상자/ 농어촌학생/ 특성화고교졸업자/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/ 만학도/ 지역균형/ 지역인재/ 국가보훈대상자/ 서해 5도 학생/ 자립지원 대상자/ 재외국민과 외국인/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/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특별전형



꿈진
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

다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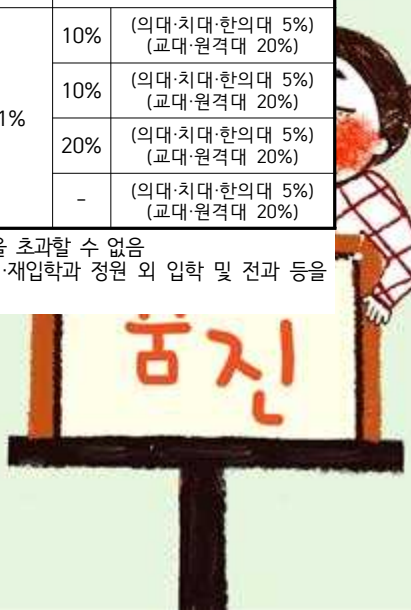
○ 정원 내 특별전형: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함
○ 본교와 분교,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
○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)
- 산업체 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
-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: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% 이내(단, 북한이탈주민,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, 외국에서 초·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·외국인·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음)
- 장애, 지체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: 제한 없음
-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대상자 특별전형: 제한 없음
- 농어촌학생 특별전형: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% 이내
-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: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.5% 이내
-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: 농어촌학생 특별전형,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1% 이내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: 농어촌학생 특별전형,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.5% 이내
-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하되, 모집단위별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관련 [별표1] 참고)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차차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

<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>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호수</th><th rowspan="2">대 상 자</th><th colspan="4">총학생수 기준</th></tr>
<tr><th colspan="2">연도별 입학정원 대비</th><th colspan="2">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산업체 위탁학생, 기타 위탁학생</td><td colspan="2">교육부장관이 결정</td><td colspan="2">교육부장관이 결정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재외국민 및 외국인 (제6·7호 대상자 제외)</td><td colspan="2">2%</td><td>10%</td><td>(의대·치대·한의대 5%)
(교대·원격대 20%)</td></tr>
<tr><td>4</td><td>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/tr>
<tr><td>6</td><td>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/tr>
<tr><td>7</td><td>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, 외국인,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/tr>
<tr><td>12
의2</td><td>대학·산업대학·기술대학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·산업대학·기술대학은 제외한다)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 제한 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14</td><td>농어촌지역 및 도서·벽지의 학생</td><td>4%</td><td rowspan="3">5.5%</td><td rowspan="4">11%</td><td>10%</td><td>(의대·치대·한의대 5%)
(교대·원격대 20%)</td></tr>
<tr><td>특성화고교졸업자</td><td>1.5%</td><td>10%</td><td>(의대·치대·한의대 5%)
(교대·원격대 20%)</td></tr>
<tr><td>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</td><td>-</td><td>20%</td><td>(의대·치대·한의대 5%)
(교대·원격대 20%)</td></tr>
<tr><td>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-</td><td>(의대·치대·한의대 5%)
(교대·원격대 20%)</td></tr>
</table>

※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관련 [별표1](2018. 10. 16.개정) 중 신입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명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
※ 사범대학(사범계학과 포함, 전문대학 유아교육과)의 경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·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교원양성기관 정원(외) 운영 규정을 따름



<참고자료>
1. **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**(한국대학교육협의회)
2. **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**(한국대학교육협의회)

[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